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순화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5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출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순화	2

I. 제출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순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각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대비표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 ----- ----- -----.
1. 대차대조표	1. 재무상태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 (생략)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재무상태표-----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u>대차대조표</u> , 손익계산서,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안의 승인	4. ----- <u>재무상태표</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u>대차대조표</u> ,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	7. ----- <u>재무상태표</u> ----- ----- ----- ----- ----- -----

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8. ~ 20. (생략) ②·③ (생략)	----- 8. ~ 2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영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u>대차대조표</u>,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 -----<u>재무상태표</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u>대차대조표</u>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 ----- ----- ----- ----- ----- <u>재무상태표</u>----- ----- -----.
제44조(감자와 공고)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재산목록과 <u>대차대조표</u>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4조(감자와 공고) ① ----- ----- -----<u>재무상태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58조(벌칙) ----- -----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 목록과 <u>대차대조표</u> 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4. ----- ----- <u>재무상태표</u> ----- -----
15. ~ 19. (생략)	15. ~ 19.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2011년부터 국제 회계기준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주권상 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¹⁾ 동 기준에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및 부채와 자본 등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기본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2007년 말 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2011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다만 비상장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2가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3가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

< 회계기준별 적용 대상 및 관련 법령 >

회계기준	적용대상	관련 법령	비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재무상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중소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대상 이외의 주식회사	상법	대차대조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front>> 재구성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아직도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법상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같은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김현정의원 대표발의²⁾로, 「상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정준호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³⁾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⁴⁾ 국회 법제실 및 법제처⁵⁾에서도 대차대조표의 순화표현으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참고로, 해수부 소관 법인을 관할하는 「한국해운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역시 관할 법률 개정 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를 한 바 있음('16.5.29, '17.11.28).

2)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운영법, 한국은행법, 협동조합 기본법, 상공회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3)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 상법, 교정공제회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경찰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기업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한국해운조합법, 전기사업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군인공제회법 등

5) 국회 법제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 202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2019.

【 재무상대표 개선 대상 법률 및 개정내용 】

법 률	개정 필요성	현황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u>국제회계기준(IFRS)이 반영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u>	현재 결산서류 작성 및 선박투자회사 정관에서 “대차대조표”가 아닌 “재무상태표”로 표기 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각종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선주가 조합을 결성한 비영리법인으로서, <u>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된 재무제표 승인을 총회결의사항으로 두고 있음.</u>	매년 회계법인 결산검사 등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시 “대차대조표”가 아닌 “재무상태표”로 표기 중
「염업조합법」	염업조합이란 소금의 수급조절, 품질향상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정기총회 1주 전까지 <u>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승인 받은 후</u> 해수부장관에게 제출	현재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로 표기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정리

□ 다만, 3개 개정안 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동법 제45조제3항은 상법 조문의 대차대조표를 인용⁶⁾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981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19